

# 자산관리위탁 변경계약서

주식회사 에이치엘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(이하 “위탁자”)와 에이치엘리츠 운용 주식회사(이하 “수탁자”)간 2024년 8월 6일 체결한 자산관리위탁계약(이하 “원계약”)을 변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산관리위탁 변경계약(이하 “본 변경계약”)을 체결한다.

## 전 문

“위탁자”와 “수탁자”는 원계약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,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본 변경계약을 체결한다.

## 다 음

### 제1조 (용어의 정의)

원계약에서 정의된 용어는 본 변경계약에서 달리 정하거나 문맥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변경계약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.

### 제2조 (변경 내용)

원계약 제9조 (자산관리보수) 제5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.

변경 전	변경 후
<p>제9조 (자산관리보수)</p> <p>⑤ 매각성과보수는 부동산매각차익[부동산 매각 금액- 부동산 취득가액]에서 매각기본보수를 차감 후 남은 초과분의 [15%]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(부가가치세 별도). 위탁자는 매각이 속한 결산기에 감사인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매각성과보수를 수탁자에게 지급한다.</p>	<p>제9조 (자산관리보수)</p> <p>⑤ <u>매각성과보수는 부동산매각차익[부동산 매각 금액- 리츠 IRR수익률이 6.50%가 되는 매각 가액]에서 매각기본보수를 차감 후 잔액의 [13%]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(부가가치세 별도).</u> 위탁자는 매각이 속한 결산기에 감사인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매각성과보수를 수탁자에게 지급한다.</p>

### 제3조 (원계약과의 관계)

본 계약은 원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.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사항은 원계약에서 정한 사항이 그대로 적용된다. 본 계약의 내용과 원계약의 내용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.

[다음 페이지에 서명(기명)날인됨]



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변경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변경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로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4년 10월 18일

위탁자

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, 2802호(삼성동, 트레이드타워)

회사명 : 주식회사 에이치엘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
대표자 : 대표이사 박 영 희



수탁자

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, 2802호(삼성동, 트레이드타워)

회사명 : 에이치엘리츠운용 주식회사

대표자 : 대표이사 조 성 진

